[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4.7>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의 제조·수입 관리대장						
[제품명: 종류: 규격(단위): 형태:]						
연 월 일	제조량 또는 수입량	출 고 량	재 고 량	비 고	결 재	

<작성요령>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과 같은 시행령 별표 6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에서 분류한 종류, 규격, 재질 및 형태(뚜껑분리형 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관리대상 제품이 수입제품인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적어야 하며, 제조제품인 경우에는 월말에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단위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kg, ℓ, 개, 개비 등으로 달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예: 윤활유의 경우에는 부피(ℓ)로 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